

# 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  
제 3325호  
2015. 12. 15.(화)

함께  
서울



**목 차**

◆ **자치법규**

**[입법예고]**

제2015-2209호 「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..... 2

## 자치법규

### 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-2209호

### 「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
2015년 12월 15일  
서울특별시장

####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가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교체하고 도시 브랜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브랜드를 에서 **I·SEOUL·U**로 변경 (안 제3조제2호 별표2)
- 나. 서울브랜드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신설 (안 제5조제3항)
- 다. 민간기업·시민참여 등 민관거버넌스 근거규정 신설 (안 제6조제3항)
- 라. 오픈소스 방식 활용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(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(참조 : 도시브랜드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6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브랜드담당관(전화: 02)2133-6197, FAX: 02)2133-0787, E-mail: hkim90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

# 함께 서울

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

- 안전한 서울
-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
- 숨쉬는 서울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									
	람								